**임원 위촉 계약서**

[ ]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[ ]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“갑”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, 그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**제1조 목적**

본 계약은 “갑”의 기업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“을”에게 위임하여 “을”이 이를 총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, 기타 제반 사장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업무의 범위**

① "을"은 "갑"의 사업과 관련하여 "갑"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② "갑"은 용역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.

**제3조 직위 및 담당업무**

① “갑”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직을 담당한다.

* 직위 : 부대표
* 등기여부 : 비등기

② “을”은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음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* “갑”의 대내외적 부대표자로서의 업무
* “갑”의 대외사업 업무
* “갑”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

**제4조 계약기간**

① 본 계약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가지로 한다.

② 계약기간 만료시 “갑”은 시장 상황과 “을”의 근무태도, 영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대한 의사를 “을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.

**제5조 보수**

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
* 기본연봉 : 일금 육천만원(제세공과 포함)
* 성과급 : 사내규정에 따름
* 위 기본연봉 및 성과급은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보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
* 기본연봉은 연봉의 1/12을 매월 말일 지급
* 인센티브는 매년 업적 및 고과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

③ “갑”은 업무효율 등의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우 “을”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거나 교통수단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필요시 이에 대한 제반 증빙을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러한 경비 지급 또는 편의 제공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“을”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.

**제6조 퇴직금**

"갑"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. 다만, “을”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원퇴직금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평균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7조 근무시간 및 휴일**

"을"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"갑"의 사규에 따른다.

**제8조 의 무**

“을”은 다음 각호의 의무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(신의성실) “갑”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(규정준수) 관계법령 및 “갑”이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(비밀유지)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(공개된 정보를 제외한 업무상 정보, 노하우, 기타 정책, 임직원의 개인정보, 회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) 및 보수 관련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(명령준수) 직무와 관련하여 “갑”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⑤ (겸업금지) 계약기간 중 “갑”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(품위유지) “갑”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(경업금지)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간 동종 및 경쟁업체를 위하여 종사할 수 없다.

**제9조 계약해지**

① "갑"은 “을”이 본 계약 제7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, 중대한 사규 위반으로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

② “을”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의사표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해당기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 손해배상**

"을"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법규 및 사규등을 위반하여 "갑"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**제11조 업무관련 창작물의 소유관계 등**

“을”이 직무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타인과 함께 창작·생성한 저작물 등 자료(메모, 디스켓, 파일 등 저장매체 불문) 및 “갑”의 고객 및 거래선에 관한 정보 및 “갑”의 업무 내용 관련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“갑”에게 귀속됨을 확인하고,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“갑”에게 불이익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표 또는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며, 퇴직 시에는 “갑”에게 전부 반납·인계토록 하기로 한다.

**제12조 분쟁해결**

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의 사규 및 일반관례를 따르기로 하며,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존재할 경우 대한민국 관계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.

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“갑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13조 기타사항**

본 계약 체결 이전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간 문서 또는 구두로써 합의된 사항이 존재할 경우, 이를 본 계약이 대체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,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.

2000 년 00 월 00 일

'갑' 주 소 :

사 명 :

대 표 이 사 : (인)

"을" 성 명 : (인)

주 민 등 록 번 호 :

주 소 :